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관련 해석·안내

(20.12.03.(목),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)

연번	질의사항	해석
1	<p>[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관련]</p> <p>○ <u>실내 전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상황</u>(2단계 이상)에서, 실내에 혼자 있는 경우 <u>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</u> 여부</p>	<p>▶ 집, 개인 사무실 등 <u>분할된 사적 공간에 혼자(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(동거인)과 함께) 있는 경우</u>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함</p> <p>- 학생이 교실에 <u>등교하지 않는</u> <u>다는</u> 전제 하에, <u>교사 혼자 교실에서 원격 수업하는 경우</u> 교실은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<u>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</u></p> <p>▶ <u>다중이용시설(음식점, 카페 등)에 이용자 없이 일시적으로 종사자가 혼자 있는 경우</u> <u>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</u></p> <p>- <u>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</u> 사업주 등이 <u>업소 내에 혼자(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(동거인)과 함께) 있는 경우는</u>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<u>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</u></p>
2	<p>[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스포츠 경기장 범위 관련]</p> <p>○ <u>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범위</u> 규정</p> <p>- 경기장의 범위에 <u>실외 공공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인지</u> 여부</p>	<p>▶ 스포츠 경기장은 <u>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경기장</u>을 의미함 (예: 잠실야구장, 월드컵경기장 등)</p> <p>- 공원 등의 <u>실외(공공)체육시설(배드민턴장, 축구장, 야구장, 농구장 등)</u>은 <u>실외 스포츠 경기장에 포함되지 않음</u></p>
3	<p>[예외상황 - 광고 촬영 등 모델의 경우 관련]</p> <p>○ <u>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이 영상·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</u>,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</p>	<p>▶ <u>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“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”으로 해석하여 예외 규정 적용 가능</u></p> <p>- 정해진 무대(촬영 스튜디오 등 포함)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가능함</p>

연번	질의사항	해석
4	<p>[운동선수가 시합·경기를 할 때 예외 규정 관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운동선수의 범위] 직업운동선수, 생활체육동호인(체육회 내 종목단체·협회 등록), 그 외 일반이용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○ [시합·경기의 범위] 정식 대회 외에 연습 경기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, 일반인들 간 단순 시합 포함 여부 	<p>▶ [운동선수의 범위] 운동선수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생활체육* 포함</p> <p>*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된 선수</p> <p>▶ [시합·경기의 범위]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</p> <p>▶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·경기에 참여하며, 시합·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예외 인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</p> <p>9. "체육단체"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p>가.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</p> <p>나. 제11조에 따른 경기단체</p> <p>다.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</p> <p>라.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</p> <p>마.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</p> <p>바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</p> <p>사. 국내대회,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</p> <p>아.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</p> <p>11. "경기단체"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.</p> </div>

연번	질의사항	해석
5	<p>[예외상황 - 거리두기 및 가림막(칸막이) 설치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]</p> <p>○ (종교시설 등) <u>설교자와 성도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,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설교자의 비말 전파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경우,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</u></p>	<p>▶ <u>실내</u>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도 <u>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</u>에 해당하며, <u>가림막(칸막이) 설치</u>가 <u>마스크 착용 예외 조건</u>이 될 수는 <u>없음</u></p> <p>* 대학, 학교 등 유사 상황에서도 동일 적용</p> <p>- 단, <u>별도의 분할 된 공간에 혼자</u>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함</p>
6	<p>[예외상황- 실내 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]</p> <p>○ <u>실내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</u>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장소이나, <u>신랑, 신부 및 양가 부모에 한해 예식 중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</u></p> <p>- <u>단체 사진 촬영 시 하객에 대해 일시적 마스크 미착용 허용 가능 여부</u></p>	<p>▶ <u>단체사진 촬영 시 하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</u></p> <p>-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는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가 이미 예외로 되었음. 이에 더해 마스크 착용까지 예외가 되면,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큼</p> <p>- 또한, 결혼식의 특성 상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함</p>

□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• 호흡기질환, 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○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
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
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○ (실내) 마스크 상시 착용
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

○ (실외) ①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(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),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

○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
※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, 기저질환자,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

-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■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■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안에서 있을 때

■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■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■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하며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등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■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■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■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<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>

○ (KF94 이상)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○ (KF80 이상) 기침,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/ 노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○ (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)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, 더운 여름철, 호흡이 불편한 경우

○ 보건용·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